		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소위원회 심의·의결
건 번	호	제 2025-212-280호
건	떙	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		돌마초등학교 (사업자등록번호 :
심	인	
		대표자
현 원	일	2025. 6. 25.
	건 심	

## 주 문

「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」제22조제2호에 따라 피심인의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35조제3항 위반에 관한 조사 사건을 종결한다.

## 이 유

의 '24. 9. 13.자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'24. 9. 23. 피심인은 신고인 위 열람 요구가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35조제4항제3호나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절하였는바, ●누가기록은 학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한 보조부로서 학교생활 기록의 일부이고, 학교생활기록은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되는 자료인 점(초·중등교육법 \$25①), <sup>22</sup>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의 부정한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, 누가기록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되 별도 결재를 받지 않는 등 작성에 있어 교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, ❸누가기록의 열람이 허용될 경우 교사는 공개 부담으로 인해 솔직하고 자유롭게 기록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, 4이로 인해 학생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기 위한 보조부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형해화될 우려가 있는 점, <sup>6</sup>피심인은 교사의 학생 관리 및 성적 처리·평가 등 교육활동 위축 우려를 이유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신고인의 열람 요구가 보호법 제35조제4항제3호나목에 따른 '각급 학교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'에 해당한다고 보아, 피심인의 이 사건 열람 거절을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제3항 위반으로 볼 수 없어 「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 2023-9호) 제22조제2호에 따라 사건을 종결한다.

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# 2025년 6월 25일

위원장 김진환 (서명)

위 원 김일환 (서명)

위 원 김휘강 (서명)